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1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	제1류		산 동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3		03.01	활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6		0304.10	- 어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		0304.20	- 어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		0304.90	- 어육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9		0305.10	-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		0305.20	-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		0305.30	- 어류의 피레트, 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훈제한 어류, 피레트를 포함한다	
12		0305.41	--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차비차·앙코링쿠스 키수즈·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13		0305.4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		0305.4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15		0305.51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		0305.5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17		0305.6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		0305.62	--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9		0305.63	-- 멸치(엔그로리스 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		0305.6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냉동한 것		
21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2		0306.12	-- 바다가재(호마루스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		0306.13	-- 새우와 보리새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		0306.14	-- 게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5		0306.19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냉동하지 아니한 것		
26		0306.2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스중· 자수스중)	
27		0306.22	-- 바다가재(호마루스중)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8		0306.23	-- 새우와 보리새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9		0306.24	-- 게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0		0306.29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31		0307.10	- 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32		0307.2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3		0307.29	-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홍합(미틸루스중·페르나중)	
34		0307.31	-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5		0307.39	-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중)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중·로리고중·노토토다루스중·세피오투디스중)	
36		0307.41	-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7		0307.49	-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문어(옥토푸스중)	
38		0307.51	-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9		0307.59	-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0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기타[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41		0307.9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2		0307.9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		
43		0401.1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4		0401.2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5		0401.30	-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6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47		04.03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일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로부터의 재료를, 우유로부터의 총 원료의 중량 대비 50% 이하로 포함해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8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인 것.
49		0404.90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0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4.06	치즈와 커드	
51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2			0406.2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3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될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로부터의 재료를, 우유로부터의 총 원료의 중량 대비 50% 이하로 포함해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54			0406.40	- 블루바인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5			0406.90	- 기타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6		04.07		조란(겉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7		04.08		조란(겉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8		04.09		천연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9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0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2부 식물성 생산품					
61	제 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2	제 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코코넛	
63			0801.11	- - 말린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4			0801.19	-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브라질넛	
65			0801.21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6			0801.22	- - 탈각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캐슈넛	

67		0801.31	- - 탈각하지 아니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8		0801.32	- - 탈각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9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0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에버카도우·과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71		0804.10	- 대추야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2		0804.20	- 무화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3		0804.30	- 파인애플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4		0804.40	- 에버카도우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5		0804.50	- 과아버·망고 및 망고스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6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7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8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9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0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1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2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진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3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및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84			0813.10	- 살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5			0813.20	- 프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6			0813.30	- 사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7			0813.40	- 기타 과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8			0813.5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9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커피(볶지 아니한 것)	
90			0901.11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1			0901.12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FOB가격의 45%이상일 것
				- 커피(볶은 것)	
92			0901.21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93			0901.22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94			0901.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95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6		09.03		마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후추	
97			0904.11	-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8			0904.12	-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99			0904.20	-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캡시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0		09.05		바닐라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101			0906.10	- 분쇄하지 아니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2		0906.20	- 분쇄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03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4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5		09.09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엔더·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106		0910.10	- 생강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7		0910.20	- 샤프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8		0910.30	- 심황(강황)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9		0910.40	- 타임 및 월계수의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0		0910.50	- 카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 기타 향신료	
111		0910.91	- - Mixtures referred to in Note 1 to this Chapter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12		0910.99	-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13	제 10류		곡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 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4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 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5		1102.10	- 호밀가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6		1102.20	- 옥수수가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7		1102.30	- 쌀가루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8		1102.9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가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는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분쇄물 및 조분	
119			1103.11	- - 밀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1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120			1103.13	- - 옥수수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121			1103.19	- -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22			1103.20	-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빵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123			1104.12	- - 귀리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4.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24			1104.19	- - 기타 곡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4.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 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 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기타 가공곡물(예: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뺀 것)	
125			1104.22	- - 귀리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6			1104.23	- - 옥수수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7			1104.29	- - 기타 곡물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8			1104.30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29			1105.10	- 분·조분과 분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30			1105.20	- 플레이크·입(粒) 및 펠리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1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껍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2			1107.10	- 볶지 아니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3			1107.20	- 볶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4		11.08		전분과 이눌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35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6	제 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품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생산되었을 것
	제 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7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발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8		1302.11	- - 아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9		1302.12	- - 감초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0		1302.13	- - 호프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1		1302.14	- -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2		1302.19	-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3		1302.20	-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4		1302.31	- - 한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70%이상인 것
145		1302.32	-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6		1302.39	-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7	제 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 납				
	제 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48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15.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49			1517.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51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150			1517.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51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 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52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53			1602.20	- 동물간장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한다)	
154			1602.31	- - 칠면조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5			1602.32	- - 닭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6			1602.39	-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돼지의 것	
157			1602.41	-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58			1602.42	- - 어깨살과 그 절단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4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9			1602.4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4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			1602.50	- 소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1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6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1류, 제 2류 및 제 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2			1604.11	- 연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3			1604.12	- 청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4			1604.13	-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링 또는 스프릿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5			1604.15	- 고등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6			1604.16	- 멸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7			1604.1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8			1604.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9			1604.3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응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4.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70			1605.10	- 계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35%이상인 것.
171			1605.20	- 새우와 보리새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35%이상인 것.
172			1605.30	- 바다가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73			1605.40	- 기타 갑각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4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74			1605.9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16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및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75			1901.10	-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176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90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177			1901.90	- 기타	한국의 HS 제1901.90.2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들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78		1904.90	- 기타	한국의 HS 제 1904.90.100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19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 상품의 소호에서 다른 소호로 제공되지 않은 한 최소허용기준은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179		1905.31	- - 스위트 비스킷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80		1905.32	- - 와플과 웨이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3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81		1905.9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 19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182		2003.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183			2005.90	-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한국의HS 제 2005.90.1000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것에 한한다.
184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5			2008.11	- - 낙화생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다만 제 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86			2008.1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87			2008.20	- 파인애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188			2008.92	- -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8.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89			2008.99	-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8.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파인애플쥬스	
190			2009.41	-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4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91			2009.49	-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4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 사과쥬스	
192			2009.80	-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93			2009.90	- 혼합쥬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0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194			2101.2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0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195			2103.90	- 기타	한국의HS 제 2103.90.1030호, 제 2103.90.9030호, 제 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7류, 및 제 9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7류 및 제 9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1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196			2106.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197			2202.1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98			2202.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99		22.03		맥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00			2204.21	- - 2리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4.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1			2204.29	-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4.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02			2208.20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8.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3			2208.30	- 위스키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208.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04			2208.70	- 리큐르류 및 코디얼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 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 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05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30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품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206			2306.5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306.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07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 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08			2309.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제 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09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02		시가·셔루트·시가틸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10			2402.20	- 권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FOB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 29류			유기화합물	
		29.21		아민관능화합물	
				-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211			2921.21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12			2921.2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1.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콜(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그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13			2922.12	-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2.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14			2922.13	-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2.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215			2922.41	- - 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2.4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6			2923.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92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품류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앵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에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에큐어스솔루션	
			- 정유(감귤류 외의 것)	
217		3301.30	- 레지노이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3301.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18		3301.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 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제품 및 고무와 그제품				
제 40류			고무와 그 제품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219		4011.10	-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 웨곤과 경주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220		4011.20	-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01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221		4011.40	- 모터사이클용의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01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				
	제 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0.2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폼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 장갑류	
222		4203.21	-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4203.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 50류		견	
223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4		50.02	생사(끈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5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6		50.04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7		50.05	견방사(견웨이스트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8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트	제50.04호에서 제50.05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9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0.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230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1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2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3	51.04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4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하며, 코옴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5	51.06	카드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6	51.07	코옴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7	51.08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8	51.09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51.06호에서 제5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9	51.1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0	51.11	직물(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1	51.12	직물(코옴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2	51.13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1.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제 52류		면	
243		52.01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2.0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4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2.0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5		52.03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6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7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8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49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 52.04호에서 제5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250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51		53.02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2		53.03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라미를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253	53.04		사이잘마와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생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4	53.05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것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방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토우·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3.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5	53.06		아마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6	53.07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7	53.08		기타 식물성 섬유사와 지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8	53.09		아마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9	53.10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0	53.11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3.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4류		인조필라멘트	
261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2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3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4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 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 (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5		54.05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6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4.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267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8		55.02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토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9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0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1		55.05	인조섬유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5

			웨이스트(노일·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2		55.06	합성스테인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3		55.07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인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4		55.08	인조스테인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5.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5		55.09	합성스테인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6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인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5.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7		55.11	인조스테인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제 55.08호에서 제5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5.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278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79		56.02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0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1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2		56.05	금속드리사(집프한 것인지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5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3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계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4		56.07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짠 것인지의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및 시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5		56.08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망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6		56.09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제품(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6.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287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8		57.02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것에 한하며,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슈맥·카라미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9		57.03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0		57.0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1		57.05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7.05

			섬유제의 바닥갈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292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3		58.02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터후트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4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5		58.04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6002호 및 제6006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6		58.05	고우벌린지·플란더스직·오버션지·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퍼티포인트·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7		58.06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8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9		58.08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술, 품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0		58.09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8.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한하며, 다른 호에 계기한 것이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301		58.10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2		58.11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58.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303		59.0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4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5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6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갈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7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8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9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0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 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 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팬틀 및 백열가스 팬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1	59.09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2	59.10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3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7에 계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5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314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5	61.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6	61.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7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8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5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19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0		61.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1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2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3		61.10	저지·폴오버·가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4		61.11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5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6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7		61.14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8		61.15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 치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29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0		61.17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1.1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 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331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2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자켓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3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4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5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6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에 한한다.
337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8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까운·드레싱까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39		62.09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0	62.10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1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2	62.12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셔스펜더·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3	62.13	손수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에서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며, 그 상품은 수입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4	62.14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며, 그 상품은 수입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5	62.15	넥타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6		62.16	장갑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347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2.1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 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넘마	
348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9		63.02	베드린넨·데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0		63.03	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 및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커튼 또는 침대용 벨런스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1		63.04	기타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2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3		63.06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4		63.07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5		63.08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3.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다만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 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6		63.09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57		63.10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 및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스크랩과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화 유리제품				
	제 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 기타	
358		6802.91	- - 대리석·트래버틴 및 엘러바스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80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59			6811. 20	- 기타 쉬트·판넬·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6811.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 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360		71.01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펜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361			7102. 10	- 선별하지 아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공업용의 것	
362			7102. 21	-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조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2.2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3			7102. 2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공업용이 아닌 것	
364			7102. 31	-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조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5			7102. 3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펜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366		7103.10	-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367		7103.91	-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3.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8		7103.9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3.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4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켜진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369		7104.10	- 압전기용 석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4.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0		7104.2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1		7104.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5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	
372		7105.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3		7113.11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3.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여부를 불문한다)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4			7113. 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3.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4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5			7114. 11	- 은제의 것(기타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6			7114. 20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377			7115. 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6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378			7116. 1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6.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9			7116. 2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6.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 비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80			7117. 11	- 커프링크 및 장식용단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7.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1			7117. 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71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제 72류				철강	
382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9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20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383		7220.11	- - 두께가 4.75밀리미터이상의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20.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4		7220.12	- - 두께가 4.75밀리미터미만의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220.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74류		동과 그 제품	
385		74.08	동의 선	제 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6		74.13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제 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4.13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387		76.05	알루미늄의 선	제 7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8		76.14	알루미늄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제 7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6.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괴	
389		8104.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출발·연삭설 및 입, 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104.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서신용 클립·레터코너·서류용 클립·색인용 택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비금속제의 대상의 스테인플(예:사무실용·가구류용· 포장용의 것)	
390		8305.10	- 서류철용 피팅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1		8305.20	- 대상의 스테이플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2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3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393		8415.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 한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의 기기	
394		8479.81	- -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79.8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5		8479.8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79.8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				
396		8482.10	- 볼 베어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482.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 기타의 변압기	
397			8504.50	- 기타의 유도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04.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398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8.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9			8518.50	- 음향증폭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8.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9		턴테이블(레코드 텍)·레코드플레이어·카세트플레이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턴 테이블(레코드 텍)	
400			8519.31	-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19.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2		제8519호 및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01			852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정지화상비디오	

				카메라·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402			8525.2 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5.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3			8528.1 2	- - 천연색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8.1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9		부분품(제8525호 및 제8528호에 계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404			8529.9 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2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2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405			8532.2 2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2.2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 어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 더·접속함). 다만, 1,000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406			8536.1 0	- 퓨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6.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 기타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제외한다)	
407		8539.2 1	- - 텅스텐 할로겐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2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를 제외한다)		
408		8539.3 1	- -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9		8539.9 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3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410		8540.2 0	- 텔레비전용 촬상관·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및 기타의 광전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1		8540.4 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간격이 0.4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4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2		8540.6 0	- 기타의 음극선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6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마이크로웨이브관(예:자전관·속 도변조관·진행파관·카시노트론) 단, 그리드제어관을 제외한다.		
413		8540.7 1	- - 자전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7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414		8540.7 2	- - 속도변조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72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의 관		
415		8540.8 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8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 기타	
416			8540.9 1	- - 음극선관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0.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를 제외한다)	
417			8541.9 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의 기기	
418			8543.8 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8543.8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2	10인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419			8702.1 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0			8702.9 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곤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 기관의 것에 한한다)	
421			8703.2 1	- -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2			8703.2 2	- - 실린더용량 1,000시이시이초과 1,500시이시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3			8703.2 3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초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3,000시이시이하의 것	
424		8703.2 4	- - 실린더용량 3,000시이시이 초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425		8703.3 1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6		8703.3 2	- - 실린더용량 1,500시이시이초과 2,500시이시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7		8703.3 3	- - 실린더용량 2,500시이시이 초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28		8703.9 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429		8704.1 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430		8704.2 1	- - 총중량 5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1		8704.2 2	- - 총중량 5톤초과 20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2		8704.2 3	- - 총중량 20톤초과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433		8704.3 1	- - 총중량 5톤이하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4		8704.3 2	- - 총중량 5톤 초과 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5		8704.9 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및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436		8708.9 4	- -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7		8708.9 9	-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438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제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7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부교·탱크·코오퍼덱· 부잔교·부표·수로부표)	
439		8907.1	-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0		제89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0%이상인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대물렌즈	
440			9002.1 1	-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1			9002.1 9	-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2			9002.2 0	- 필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3			9002.9 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90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20부 잡품					
	제 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3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444			9403.3 0	- 사무실용 목재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45			9403.4 0	- 주방용 목재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46			9403.5 0	- 침실용 목재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447			9403.6 0	- 기타의 목재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